

**[통영]2023년 4차 경상조사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**

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「2023년 4차 경상조사 대체 기간제근로자」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. 2. 9.  
통계청 통영사무소장

**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**

지역	채용구분	채용인원	계약방법	채용기간	수당	비고
통영 거제 고성	대체 기간제근로자	1명	근로계약	2023. 3. 2.~2023. 4. 28. (근무기간 변경될 수 있음)	69,230원 (1일 기준)	

- \* 수당은 2023년 기준 단가로 변경될 수 있음
- \* 표본관리비 및 급식비 별도 지급
- \* 기관의 사정에 따라 채용인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
**2 담당업무**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어업부문 경상조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어업부문 경상조사, 연간 및 특별조사(사무소 사정으로 채용 후 변경될 수 있음)</li> <li>· 조사대상처 관리 및 조사업무</li> <li>· 현장(방문)조사 및 조사표 작성</li> <li>· 조사표류 입력, 내용검토 및 보완 등</li> <li>· 그 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</li> </ul>

**3 선발방법**

- 1차전형
 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응모자의 채용 제한 여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  -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평가하여 1차전형 합격자 선정
  - ※ 자기소개서 미제출 시, 서류미비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2차전형
  - 1차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정
  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최종합격자 선정기준

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 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</li> <li>-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 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</li> <li>- 전물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</li> <li>- 전물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</li> <li>-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 민주화운동 희생자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</li> </ul>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특수임무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중 배우자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</li> <li>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</li> </ul>

#### 4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사무소에서 **지정한 장소(관할지역)에 출퇴근 및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**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
#### 5 전형일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3. 2. 17. (금) 17:00
- 면접일시 및 장소 : 2023. 2. 21. (화) 10:00~, 통계청 통영사무소 2층 중회의실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3. 2. 23. (목) 17:00
  - 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>) 채용정보에 공고
  - ※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#### 6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2. 9.(목) ~ 2023. 2. 16.(목) 18시까지
- 접수방법
  - 방문접수 : 평일 09:00~18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 - 우편 및 이메일 접수 :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전화번호
통계청 통영사무소	천민경	경상남도 통영시 용남해안로 355 2층 경제사회통계팀	전화 : 055-640-0713 팩스 : 055-648-3364 메일 : gyeong1798@korea.kr

#### 7 제출서류

- **[필수]** (붙임1) 응시원서
- **[필수]** (붙임2) 자기소개서
- **[필수]** (붙임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- (붙임4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  - ※ 필요 시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
  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#### 8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안내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【붙임1】 응시원서(필수 제출)

##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

업무명	2023년 경상조사		분 야	기간제근로자	응시번호	
성 명 (한글)			성 별			
			생년월일			
연락처	핸드폰번호	( ) -				
	주 소	(도로명주소) (지번주소)				
	e-mail					
일 반 경력사항	기 간	근 무 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통계청 경력사항	기 간	근 무 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자 격 사 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	
	전산 관련					
	기타					
기 타	저소득층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보육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	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년 월 일 성 명 : (서명)						

주 1」 거짓으로 작성 시 채용 취소 및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
 2」 신원조사 결과 또는 사후 확인 등으로 채용결격사유(부적격자)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
 붙 임 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, 국가유공자 증빙서류,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, 자격증 등)

【붙임2】 자기소개서(필수 제출)

## (통영)2023년 경상조사 대체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

부 서	통영사무소	조 사 명	2023년 경상조사	지원분야	기간제근로자
성 명			휴대폰번호		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작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					
<b>■ 과거 경력 관련 내용 등</b> 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					
<b>■ 통계청 어업부문 경상조사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</b>					
<b>■ 지원동기 및 포부 등</b> -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청 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					

